

산업보건 주요뉴스

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『산업안전보건법』

적용범위 20여 년 만에 대폭 손질

- 안전보건관리체제, 안전보건교육,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
- 특별교육, 공정안전관리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등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
-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화

▶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. 또,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의무화된다.

-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·시행 규칙 개정안을 8월6일(화) 공포하였다.

1.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적용범위 확대

▶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*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.

- * 1) 안전보건관리책임자: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·관리 하는 자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업무를 관리
- 2) 산업안전보건위원회: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산업 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노·사 협의기구
- 3) 안전보건관리규정: 해당 작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업장의 자치규정

<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적용이 확대된 업종>

▲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

1)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

- ①농업, ②어업, ③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④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⑤정보서비스업,
- ⑥금융 및 보험업, ⑦임대업·부동산 제외, ⑧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연구개발업 제외), ⑨사업지원 서비스업, ⑩사회복지 서비스업

2)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

- ①봉제의복 제조업, ②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,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, ④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재 서비스업, ⑤보건업(병원 제외),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

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는 농업, 어업 등 유해·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된다.

<안전·보건관리자 적용이 확대된 업종>

▲ 안전관리자 제도: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

- ①농업, ②어업, ③봉제의복 제조업,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, ⑤건물·산업 설비 청소 및 방재 서비스업,
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, ⑦보건업, ⑧임대업

▲ 보건관리자 제도: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[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(토목공사는 1천 억원 이상)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인 사업장]

- ①농업, ②어업, ③봉제의복 제조업,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, ⑤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재 서비스업,
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, ⑦보건업, ⑧수리업, ⑨건설업

- ▶ 안전보건교육* 제도 적용 대상 업종도 12개가 추가되었으며,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,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·위험한 작업 시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업종·규모에 관계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였다.

*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, 작업내용 변경 시, 유해·위험 작업 종사 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실시

<안전보건교육 적용이 확대된 업종>

▲ 안전보건교육: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

- ①농업, ②어업, ③봉제의복 제조업,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, ⑤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재 서비스업,
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, ⑦보건업, ⑧임대업, ⑨수리업, ⑩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, ⑪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,
⑫폐기물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

- ▶ 그리고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*는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주로 제조·건설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.

*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협의체의 구성·운영, 작업장 순회점검, 안전보건교육 지도·지원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

- ▶ 또한 유해·위험물질의 취급량, 유해·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(PSM) 제도 등*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.

- 이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·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.

* 공정안전관리, 유해위험방지계획서, 유해작업 도급금지, 특별교육

2.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화

산업보건
주요뉴스

- ▶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야간작업*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,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
-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,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.

* 1)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
2)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*된다. ↗

* 1)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: 2014년 1월 1일

2)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: 2015년 1월 1일

3)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: 2016년 1월 1일

